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8.

영 광 군 수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57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건물번호 부여 · 폐지 내역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534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양길2길 59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626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양길2길 60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936-1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9길 54-16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936-1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9길 54-14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23-43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로 185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335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21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50-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42-34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750-11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덕로 115-21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54-12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1길 38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대마면 북평리 180	전남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11길 43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185-2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양길4길 39-13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592	전남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1길 57		건물신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320	전남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2길 54		건물신축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사유

- 현행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해 각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1. 10. 12. ~ 11. 0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노인가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전화) 061-350-5548, FAX) 061-350-57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 350-55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사유
 - 본 조례는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 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1. 10. 12. ~ 11. 0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노인가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전화) 061-350-5548, FAX) 061-350-57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 350-55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1-127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영 광 군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표자 (성명)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릉로23
소하천명		명당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전남 영광군 흥농읍 신석리 244-3외 11필지		
	면적	376.4㎡(영구)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0. 14. ~ 영구		
	목적 및 사유	국도77호선 영광흥농신석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재포장)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1-127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영 광 군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표자 (성명)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릉로23
소하천명		명당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전남 영광군 흥농읍 신석리 17-1번지외 4필지		
	면적	632.9㎡(영구)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0. 14. ~ 영구		
	목적 및 사유	국도77호선 영광흥농신석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재포장 및 수로박스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영광 흥농 승마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전 주민 열람·공고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일원의 ‘영광 흥농 승마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니다.

2021. 10. 15.

영 광 군 수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5-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체육시설 - 승마장
- 명칭 : 영광 흥농 승마장 조성사업

다. 사업(부지) 면적

- 시설면적 24,740㎡
- 건축면적 : (당초)766.97㎡ → (변경)3,591.53㎡
- 연 면 적 : (당초)747.02㎡ → (변경)3,571.58㎡
- 건 폐 율 : (당초)3.51% → (변경)16.03%
- 용 적 율 : (당초)3.42% → (변경)14.44%

명칭 내용	관리사	마 방	창 고	퇴비사	펌프실	교육장	실내승마장 (신축)	합 계
건축규모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
건축면적	96㎡	372.6㎡	96㎡	60㎡	4㎡	138.37㎡	2,824.56㎡	(당초)766.97㎡ (변경)3,591.53㎡
연 면 적	96㎡	372.6㎡	96㎡	60㎡	4㎡	118.42㎡	2,824.56㎡	(당초)747.02㎡ (변경)3,571.58㎡

라. 사업의 목적 : 기 조성되어 운영중인 영광 승마장에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 승마장”을 신축하여 승마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성명 : 영광군수(산림공원과)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2. 12. 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3.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영광군청 산림공원과에 비치)
4. 열람일시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1. 10. 15. ~ 10. 29.(14일간)
 - 나.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4764)
 - 다.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농	진덕	380-2	체	2,569	2,569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			
2	홍농	상하	3	전	965	965	〃	〃			
3	홍농	상하	4	전	1,967	1,967	〃	〃			
4	홍농	상하	5-7	체	18,703	18,703	〃	〃			
5	홍농	상하	5-14	체	188	188	〃	〃			
6	홍농	상하	5-23	입	348	348	〃	〃			
총 계					24,740	24,74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의 목적, 접종 종류, 접종지원 대상, 지원횟수 규정(안 제 1조 ~ 제4조)
- 접종신청 방법, 예방접종업무 위탁, 접종비용 지원 및 중단 및 환수, 준용(안 제5조 ~ 제9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11. 4.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보건소)
전화) 061-350-5848, FAX) 061-350-51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350-58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 례 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수막구균성 수막염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각호의 감염병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2. 대상포진: 만65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횟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에 준한다.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